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요양비 수급자가 적시에 필요한 요양비 급여품목을 사용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부에서는 '동일상병-동일처방'의 경우, 기존 수급자에게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를 허용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니, 요양비 급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례인정 기준은 2024년 3월 5일 청구분부터 적용

붙임 의사 집단행동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대한의사협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한국당뇨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사)한국회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사단법인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주무관	김유나	행정사무관	정규영	보험급여과장	전결 2024. 3. 5. 정성훈
-----	-----	-------	-----	--------	-----------------------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982 (2024. 3. 5.)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35 팩스번호 044-202-3934 / una619@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요양비 수급자가 적시에 필요한 요양비 급여 품목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의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다 음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요양비 지급의 경우, 복막관류액 (전문의약품으로 처방전 필요)을 제외한 급여 품목에 대하여 전공의 과업이 종료될 때까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 지급 청구할 수 있음
- 요양비 급여를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로서, 기존 처방전에 따른 처방기간이 도래하거나 도과한 경우로, 동일 상병에 대한 동일 처방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최초 처방의 경우나 기존 급여 내역과 다른 상병이나 처방내역에 대한 급여 청구는 적용 제외)
 - 위 특례 급여 품목의 경우 각 요양비 품목별 처방기간 단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향후 급여특례 종료 이후에는 기존 급여기간이 종료되어 요양비 급여청구를 하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 첨부 필요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처방전이 없음을 이유로 요양비 품목 판매(대여)를 거부할 수 없음
- 상기 기준은 2024년 3월 5일 청구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적용